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4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형수 · 김대식 · 조정훈
송언석 · 임종득 · 고동진
박성민 · 최형두 · 김도읍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 (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p> <p><신 설></p>	<p>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p> <p>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u>중전의 우 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 0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 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 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 를 발급할 수 있다.</u></p>